

경인식약청 수입검사 월간 뉴스레터

제35호 · 2022.01.

수입검사관련 정보

◆ 수입식품등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지시¹⁾

검사 대상	검사 항목 또는 방법
1. 인도네시아 PT AJINEX INTERNATIONAL사에서 제조한 L-글루탐산나트륨	염화물
2. 베트남 TAM HUU DUNG사에서 제조한 당절임	이산화황
3. 터키산 로커스트콩겍	에틸렌옥사이드 및 2-클로로에탄올
4. 모든국가 홀리바질	디메토모르프(Dimethomorph)
5. 모든국가 살비아	사이목사닐(Cymoxanil)

◆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²⁾

구분	대상식품	국가	검사항목	명령기간	사유
변경 전	노니를 50%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	베트남, 인도네시아	금속성 이물	'20.12.24. ~'21.12.23.	부적합 반복 발생
변경 후		<u>베트남 (2개 제조업소),</u> <u>인도네시아 (1개 제조업소)</u>		<u>'21.12.24.</u> <u>~'22.12.23.</u>	

※ 검사명령대상 제조업소

① PT.HUMAN BIO TEKNOLOGI (인도네시아)

② VIETNAM PHARMACEUTICAL JOINT STOCK COMPANY (베트남)

③ HUNG PHAT TEA CORPORATION (베트남)

◆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구비서류 변경³⁾

① 신규

대상국가	대상제품	증명내용	제출서류 구분	기타
모든국가	남극크릴을 원료(100%)로 제조한 어유 제품	리놀레산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	원본	2021.12.20. 선적분부터

② 변경: 베트남 쥐치포 수입가능 해외제조업소 명칭 변경

1) 수입식품정보마루(<http://www.impfood.mfds.go.kr>>안전정보>수입검사관련정보>통관단계검사지시)에서 열람 가능

2) 수입식품정보마루(<http://www.impfood.mfds.go.kr>>알림자료>수입식품뉴스>정책소식)에서 열람 가능

3) 수입식품정보마루(<http://www.impfood.mfds.go.kr>>안전정보>수입검사관련정보>증명서제출)에서 열람 가능

제목을 누르시면 관련 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
축산물

◆ **축산물 수입 금지 조치**

- 스웨덴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산 신선, 냉장, 냉동 가금육과 식용란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

◆ **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**

대상	결과	적용일	추가사항
호주산 멸균식육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	서식 승인	'22.1.1. 발급분부터	해당 수출위생증명서는 한국으로 수입 시 2부 필요 (원본 2부 OR 원본 1부+부분 1부)
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	서식 변경	'22.1.3. 발급분부터	-

- * 우리 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- 정책정보 - 식품정책정보 -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에서 확인 가능
- * 우리 처 누리집(www.mfds.go.kr) - 정책정보 - 식품정책정보 -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

법령·고시 제·개정사항

◆ 「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」 일부개정고시 (제2021-115호, 2021.12.29.)

-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된 검체 인수·인계서 활용
- 부적합 동일사 동일 축산물 현장검사 결과 전량 부적합한 경우 다음 수입 5회 연속 검사 등

◆ 「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(제2021-118호, 2021.12.31.)

-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
- 선하증권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 적용 등

- * 우리 처 누리집(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제·개정고시등)에 게재

이 달의 보도자료

◆ **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(2021.12.17. 보도)**

-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」을 개정

◆ 식약처, ‘한-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’ 체결 (2021.12.20. 보도)

-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 (BFAR)과 ‘한-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’ 체결
- 위생 약정 주요 내용은 ▲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▲위생증명서 발행 ▲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·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

◆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·절차 등 최신 정보 안내(2021.12.16. 보도)

- 국내 축산물의 국가별 수입요건·절차 등 수출정보의 신규·변경 사항을 반영해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‘축산물 수출 안내서’ 배포

기 존	개 정
미국 등 12개국의 수출관련 규제 정보 수록	미국 등 12개 국가 수출정보 업데이트, 러시아 등 3개국과 EU의 수출정보 추가(신규)
싱가포르 수출품목: 가금육가공품, 식용란, 알가공품	싱가포르 수출품목: 가금육가공품, 식용란, 알가공품, 돈육가공품(추가)
-	아프리카 돼지열병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(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) 정보 추가(신규)
수출작업장 목록 ('20.2월 기준)	수출작업장 목록 ('21.11월 기준) 현행화

◆ ‘수입 크릴오일’ 국민청원 검사결과 발표 (2021.12.27. 보도)

- ‘수입 크릴오일’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 수거 검사한 결과,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
-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%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

* 이 달의 보도자료는 우리 처 누리집(<http://www.mfds.go.kr> > 알림 > 언론홍보자료 > 보도자료에 게재



【공직자 부패·공익신고안내】

- ▶ 식약처 누리집 “국민소통 > 신고센터 > 국민신문고 > 부패·공익신고 상담” 코너 -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.

청렴한식약처,
국민안심의 시작

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받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, 아래의 번호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·반영하겠습니다.

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☎ 02-2110-8162, Fax 02-2110-0815